KOSHA GUIDE E - 139 - 2013

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충북대학교 김두현 교수

o 제·개정 경과

- 2013년 11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IEC 60598-2-22, Luminaries-Part 2-22: Particular requirements Luminaries for emergency lighting
 - KS C IEC 60598-1 등기구 제1부 :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 제1절 (전기기계·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), 제3절(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)
- 0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139 - 2013

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기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술지침은 비상 등기구의 표시와 기능안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비상 조명(Emergency lighting)"이라 함은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되는 조명을 말하며, 비상구 조명, 위험지역작업조명, 대기조명을 포함한다.
 - (나) "지속형 비상 등기구(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)"라 함은 정상 조명 또는 비상 조명이 항상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한다.
 - (다) "비지속형 비상 등기구(Non-maintained emergency luminaries)"라 함은 일반 조명이 고장 났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비상조명 램프를 내장한 등기구를 말하다.
 - (라) "복합형 비상 등기구(Combined emergency luminaries)"라 함은 적어도 하나의 램프는 비상 전원으로부터 공급받고, 나머지는 정상 전원으로부터 공급받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램프를 가진 등기구를 말하며, 복합형 등기

E - 139 - 2013

구는 지속형 비상 등기구거나 또는 비지속형 비상 등기구이다.

- (마) "자체 내장형 비상 등기구(Self-contained emergency luminaries)"라 함은 배터리, 램프, 제어장치 그리고 자체 진단과 모니터 시설과 같은 모든 구성 요소가 등기구 또는 그것에 인접하여 포함되어 있는 지속형 또는 비직속형 비상 조명을 제공하는 등기구를 말한다.
- (바) "중앙전원 공급형 비상 등기구(Centrally supplied emergency luminaries)" 라 함은 중앙비상 전력시스템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지속형 또는 비지속형 비상 등기구를 말한다.
- (사) "비상 등기구의 정격 광출력(Emergency luminaries rated lumen output)" 이라 함은 정상 전원이 고장난 후에 동작의 정격 시간에서 등기구 제조자에 의해 60 초(위험작업지역 등기구에 대해 0.25 초) 동안 제시되는 광출력을 말한다.
- (아) "비상 모드(Emergency mode)"라 함은 정상전원이 고장났을 때 내부 전원에 의해 조명을 하는 자체 내장 비상 등기구의 상태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비상 등기구의 분류

비상 등기구는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표시한다.

- (1) 형식, 동작모드, 부수장치, 등기구의 정격기간을 등기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.
- (2) 비상 등기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 해당 칸과 위치에는 의도하는 구조에 관한 문자 또는 그림으로 완성한다.

E - 139 - 2013

*	**	***	****

(가) 첫째 칸 - 형태

① X : 전원 내장형

② Z : 중앙 전원 공급형

(나) 둘째 칸 - 동작 모드

① 0: 비지속형

② 1: 지속형

③ 2: 비지속형 결합형

④ 3: 지속형 결합형

⑤ 4: 비지속형 복합형

⑥ 5 : 지속형 복합형

⑦ 6: 위성

(다) 셋째 칸 - 장치, 적당한 설치 장소를 각 위치에 표시

① A: 시험 장치 포함

② B: 원격 정지 모드 포함

③ C: 금지 모드 포함

④ D: 고위험 지역 등기구

(라) 넷째 칸 - 전원 내장형 등기구에 관한 사항(분 단위로 표시되는 비상 모드의 최소 기간을 표시)

① *10 : 10분을 표시

② *60 : 1시간을 표시

③ 120 : 2시간을 표시

④ 180: 3시간을 표시

(3) 표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(가) X 1 *B*D *60 은 원격정지모드, 고위험 지역에 적합, 비상모 드기간이 60 분인 전원 내장형 등기구

E - 139 - 2013

(나) Z 1 **** 은 중앙 전원 공급형, 지속형 등기구

5. 비상 등기구의 표시

- (1) 등기구에는 정격전압 또는 정격전압범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.
- (2) 등기구에는 4항의 분류에 따라 세부 분류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.
- (3) 등기구에는 램프 교체 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대체 램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. 이것은 비상 등기구의 정격 광출력을 보장해야한다.
- 비고 : 적합 대체 램프에 관한 사항은 번호, 형태, 정격 전압 그리고 정격 전력 등이 포함된다.
- (4) 적절한 곳에 정격 주위온도 표시와 함께 주위 온도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. 필요시 등기구 설명서에 명시해도 좋다.
- (5) 교체용 퓨즈 또는 교체용 지시 램프를 사용하는 비상 등기구는 퓨즈 또는 지지램프의 세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
- (6) 정상 전원 고장을 모의 실험하는 시험 설비에는 시험하는 동안 표시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7) 자체 내장형 등기구에는 배터리 형태, 정격 전압, 배터리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 비교체형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등기구는 표시하 지 않아도 된다.
- (8) 자체 내장형 등기구의 배터리에는 제조년월이 표시되어야 하고, 적절한 배터리 폐기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.
- (9) 복합형 비상 등기구에 적합한 램프의 세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 만약 램 프가 비상회로에 사용되는 램프와 정상 전원회로에 사용되는 램프가 다르

E - 139 - 2013

면 각각의 램프 형식을 표시해야 한다. 복합형 비상 등기구에서 비상 램프 용 홀더는 램프 교체 시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도 지름 5 mm의 녹색 점을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- (10) 자체 내장형 비상 등기구가 정격 동작 기간까지 동작하지 못할 때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.
- (11) 설명서에는 등기구 시험도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, 시험 도구를 별도로 제공한다면 적절한 사용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(12) 복합형 비상 등기구와 연관된 위성 비상 등기구 연결용 도선에 대하여 세부 사용 설명을 해야 한다. 최대 케이블 길이는 3 % 이하의 전압 강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- (13) 전원 내장형 비상 등기구의 설명서에는 동작 모드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.
- (14) 제조자는 6항의 기능안전에 따라 광학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.
- (15) 등기구의 사용절차는 제조자의 설치 설명서로 제공해야 한다. 이 사항은 형식시험을 하기 전에 검사한다.
- (16) (1)과 (2)의 표시는 등기구를 설치할 때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.
- 비고 : 매입형 등기구의 내부에 표시하여 조명 제어장치 덮개를 열었을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17) 외부 플러그와 소켓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기구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의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.
 - "등기구는 의도하지 않은 전선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한다."

E - 139 - 2013

- (18) 제조자는 등기구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에 램프 또는 배터리가 비교체형 인 경우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.
- (19) (1)~(16)까지의 적합성은 육안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.

6. 기능 안전

- (1) 모든 비상 등기구는 비상 모드 동안에 제조자가 정한 정격 광출력을 가져야 한다. 그리고 다음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 - (가) 비상 등기구는 정상 전원의 고장 후 5 초간 비상 모드의 동작 동안 요구된 정격 광출력의 50 %를, 60초 후부터 비상 작동 기간까지 완전한 정격 광출력을 제공해야 한다.
 - (나) 고위험 지역용 비상 등기구는 정상 전원이 고장난 후 비상 모드로 동작해서 0.25 초부터 비상 동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격 광출력을 낼 수 있도록 램프 전류를 제공해야 한다.
 - (다) 적합성은 다음 시험으로 측정하여 확인한다.
 - ① 전원 내장형 등기구는 최소 정격 전압의 0.9 배로 24 시간 충전 후 내부 배터리로부터 비상 모드로 동작하는 동안 측정한다.
 - ② 중앙 전원 공급형 비상 등기구는 안정한 열 조건에 이르렀을 때 최소 정격 전압의 0.85 배에서 동작하는 동안 측정한다.
 - (라) 전원 내장형 비상 등기구와 중앙 전원 공급형 비상 등기구에 대한 측정 은 새로운 램프를 사용해야 한다.
- 비고 : 중앙 전원 공급형 등기구의 광출력 측정 시 최소 정격 전원 전압은 케이블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(2) 제조자는 비상 모드에서 동작하는 등기구에 대한 배광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. 이 데이터는 다음 사항의 복합 작용에 의한 최소 광속 조건에서 교정해야 한다.

E - 139 - 2013

(가) <표 1>에 규정된 최소 방전 전압 또는 제조자에 의해 규정된 정전 시 전압

<표 1> 배터리 수명 말기에서 방전 전압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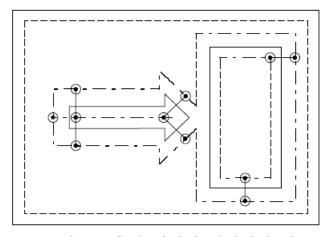
배터리 형태	방전 조건		
	1시간 미만 (V/cell)	1시간 이상 (V/cell)	
니켈 카드뮴	1.0	1.0	
납 산	1.75	1.80	

- (나) 정상 전원을 중단하고 60 초부터 비상 조명 시스템의 언급된 기간까지의 연속적 동작 동안(고위험 지역 등기구는 0.25 초) 중앙 전원 공급형 등기구에서 발생하는 케이블 전압 강하를 포함한 최소 동작 전압
- (3) 안전색을 구분하기 위해 비상 탈출 등기구에서 광원의 연색 지수에 대한 최소값은 Ra > 40이어야 한다. 적합성은 검사로 확인한다.
- (4) 내부적으로 비추는 비상 안전표지는 비상 모드에서 다음 조도와 휘도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.
 - (가) 색 : 색은 ISO 3864의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
 - (나) 휘도 : 표지 안전색의 어떤 영역의 휘도는 모든 적절한 시야 방향에서 2 cd/m^2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비고 : - 흰색 또는 안전색 내에서 휘도비 $L_{rac{a}{4} ext{ iny III}}/L_{rac{a}{4} ext{ iny L}}$

- 휘도비 L_{휘색}/L_색
- 빛나지 않음
- (다) 적합성은 <그림 1>에 따라 측정하여 확인한다.

E - 139 - 2013



<그림 1> 측정 위치의 전형적인 예

- ① 휘도는 표시가 있는 각 색의 표면에 대해서 보통 10 mm 지름 영역의 표면에서 측정한다.
- ② 최소와 최대 휘도는 그 영역에서 측정하고, 100 mm 너비의 색깔 있는 바탕에 대해서 경계색은 측정하지 않는다.
- ③ 2개의 인접한 색 사이의 휘도비를 측정하기 위한 휘도 측정은 색 면적이 30 mm 이하라면 두 색의 경계면의 15 mm의 거리에서 수행되고 측정 영역 10 mm 지름은 축소한다.
- ④ 계측기의 오차는 10 % 이하이어야 한다.
- ⑤ 측정된 값은 항상 이 규격에 규정된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.